

섬기는재활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

1. 기본정보

기관명	섬기는재활복지센터		
설치일자	2023. 06. 29		
소재지	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71 2,3 층		
전화번호	051-624-6424	전화번호	051-914-6424
이용대상	① 만 65 세 이상 또는 만 65 세 미만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(1~5 등급, 인지지원등급/단, 인지지원등급은 정원 외 10%범위내에서 이용가능) ② 치매진단을 받고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		

2. 이용 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 정원 : 이용정원은 55 명으로 하며, 정원외 10%범위 내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. 정원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자체에 신고하여 변경한다.

3. 이용자 모집 방법 :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, 블로그와 홍보지,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(현수막), 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.

4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이용계약서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다.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정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계약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-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시 : 이사, 보호자 변경 등 -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-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급여 비용을 지체했을 경우 -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- 이 계약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이용료 및 비용부담, 이용료 산정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 -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%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, 의료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%, 9%등 건강보험공단이 정함에 따른다. -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-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.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	<p>① ‘신원인수인(보호자)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서비스 - 이용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-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 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가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-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, 가족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-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<p>② 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(의무)하여야 한다.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-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입에 관한 의무 -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 의무 -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,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-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
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단 제 3 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-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
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규정의 개정은 센터 실무자, 자체평가,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한다. -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결 즉시 시행된다.

5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으며 수시 열람 가능함.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6. 2026 년 수가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 인지지원
3시간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
6시간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
8시간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
10시간이상 ~ 13시간 미만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/56,360
13시간 초과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/56,360

7. 비급여 항목

비급여 항목	금액 (단위 : 원)
식사 재료비	4,000원
간식비	1,000원